

**제1호
2020.9**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 소식지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소식지 제1호 | 발행일자 2020년 9월 25일 | 발행인 하상수 | 기획편집 이하나
전화 070-4120-6150 | 이메일 equallabor@hanmail.net | 빙드 <https://band.us/@aynodong>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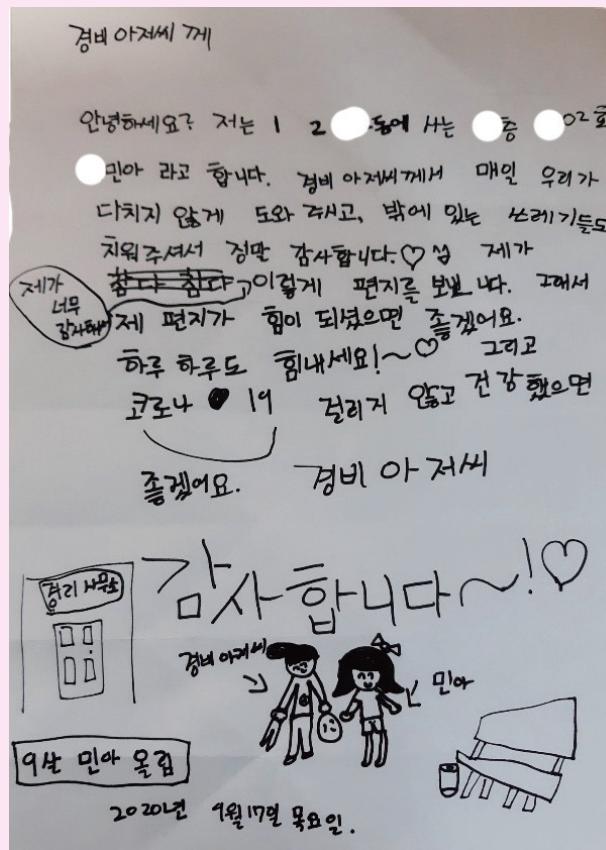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출범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일대의 아파트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을 발족했습니다. 지원사업단은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아파트경비노동자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옆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지원사업단이 여러분의 고충을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아파트내 근무 중
갑질피해, 부당대우 바로 신고해주세요
폭언, 폭행, 부당대우, 비상식적 갑질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수행 단체
070-4120-6150

9살 어린이의 편지



경비사업단에게 군포의 한 어린이가 보낸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9살 어린이의 따뜻한 편지가 큰 위로가 됩니다.

사진제공 : 군포당동 임○○ 경비노동자

경비법 개정에 대한 상생모델, 우리가 만들자

아파트경비원의 업무과중과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며 아파트경비업법의 개정은 여러차례 논의되어 왔다. 2019년 일부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도난화재 방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 아파트경비를 업무로 하는 관리업체는 이 법안에 따라 도난과 화재를 방지하는 경비업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020년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업체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나서자, 현실과 맞지 않아 경비원이 대량해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사례도 나타났다. 지금의 아파트경비노동자는 주차와 택배보관, 청소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경비업무만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 외의 생활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다른 직군의 노동자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비원이 아닌 생활관리원 등의 다른 이름을 붙이고 고령의 노동자를 퇴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의원은 7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관리업체를 단속하거나 경비원을 무단 해고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각 아파트에서 사전 협의하고 명시하는 것으로 골자를 잡았다. 한편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 관리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에 들어가는 경비노동자 보호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의 발의안도 박용진 의원과 비슷하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이 경비업무 외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반영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현실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강자가 새로운 법안의 틈새를 파고 들어 법안을 악용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아파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업체와 입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미리 준비해 제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법안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모여 의견을 모으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할 이유다.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1

찾아가는 실태조사

지난 8월 24일부터 17일간, 안양군포의왕과의 모든 아파트를 순회하여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신 경비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경비노동자 간담회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과 현재 아파트에 경비로 근무중인 노동자들이 만나 간담회를 갖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보호하고 아파트 입주민, 관리업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의 내용은 지원사업단에서 정리하여,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3

노동자 자조모임 결성

그간 경비노동자들은 노동인권침해를 당해도 혼자 소송을 걸거나 혼자 다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조모임을 만들면 여러 사람의 힘과 용기가 모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이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단이 적극 돕겠습니다.

제 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제 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 제 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갑질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 13 조는 입주자등의 의무이며, 6항에는 경비원 및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가 담겼다. 또한 업무방해 금지등에 관한 제 14조 3항에는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14조 3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각 개별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 개정할 때 참고하는 용도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홍보 한다. 경기도는 아파트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항목이 추가된 것을 널리 홍보하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반영해야 그 실효성이 발휘될 것으로 본다.

군포시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군포시 의회는 김귀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9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규정이 정리 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포시장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등의 피해를 입힌 입주자는 소명을 요구하고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군포시는 입주자들에게 연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 4조에 기재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책무조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해 공표되는 날부터 바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안양군포의왕과천지역에서 군포시의회를 선두로 다른 시에서도 하루빨리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인사드립니다



지원사업단장
정성희



조직국장
임정욱



홍보국장
박창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 6대 제도개선 요구안

■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짧게 설정하는 사업장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예산소요 없이도 단기계약 근절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1년 미만자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미만 단기계약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 휴게공간 설치 규정을 강화하라!
휴게시간에 경비, 청소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공간 지원의무와 휴게시설 요건을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휴게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
휴게시간에도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입주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확대 적용 촉구한다!
입주민들의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거나, 경비노동자가 자살을 택하는 등 극단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승인절차를 강화하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철저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경비노동자 자조모임에 참여하세요



경비노동자들만의 일터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자조모임에 참여하실 경비노동자를 찾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가 자조모임 설립과 추진을 돕습니다. 이미 소모임이 있으신 분, 동료들과 모임을 만드신 분, 또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비정규직센터에서 모임을 지원해드립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무법률 상담신청

031-8030-4541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경기도 산하 노동상담소와 마을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노무법률상의

계약갱신기대권

근로의 형태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 : 2020년 대구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건